이용 안내서

민들레 요양원

● 인사말

“기관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민들레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원 소개

기관명	민들레 요양원	설치일자	2021.08.01
급여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29명
대표자	연명일	협력의료	조은성모의원
홈페이지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matilda728	전화번호	032-327-700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303번길 36(중동), 금호프라자 901호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1식 35,000 원 x 3 = 1일 10,500 원	
	간식비	1식 1,500 원	
시설규모	건물면적 500㎡ , 연면적 1,430 ㎡		

구분	침실	사무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의료간호	물리(작업)	프로그램	식당/조리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시설	9	1	1	1	1	1	1	1	2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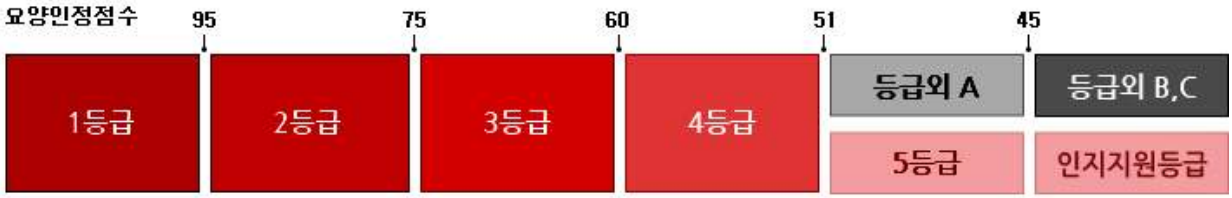

●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듦)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약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 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6. 작업치료	1) 언어치료 2) 작업치료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듦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8) 투석관리	(1) 복막투석 관리 (2) 혈액투석 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시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5. 임종관리	1) 임종간호	(1) 임종간호

● 일일 생활시간표

시간	내용
06:00~07:00	기상 및 아침 식사 준비
07:00~08:30	아침 식사 및 개인위생
8:30~10:00	기본 건강체크, 아침 체조, 투약
10:30~12:00	오전 프로그램 제공
12:00~13:00	점심 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13:00~14:00	개인활동, 휴식 말벗 지원
14:00~17:00	오후 프로그램 제공
17:00~18:00	개인활동
18:00~20:00	저녁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20:00~21:00	자유시간(음악, 말벗, TV)
21:00	취침
22:00~06:00	야간점검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인지프로그램 (60분) A그룹	인지프로그램 (60분) B그룹	인지프로그램 (60분) C그룹	인지프로그램 (60분) A그룹	인지프로그램 (60분) B그룹	
▶ 매월 가족지지 (생신잔치) 진행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진행					

● (2023.03월 기준 요양원 현황)

○ 종사자 근무체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1	1	1		13		2	
야간근무 매일 18:00~09:00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단위 : 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 (20%)
1	78,250	15,650
2	72,600	14,520
3,4,5	66,950	13,390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40)	8%, 12%

○ 계약의사

초진	재진
17,320	12,380

○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FA20218078242000)	2022.08.02 ~ 2023.08.02
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액 1억원	

● 후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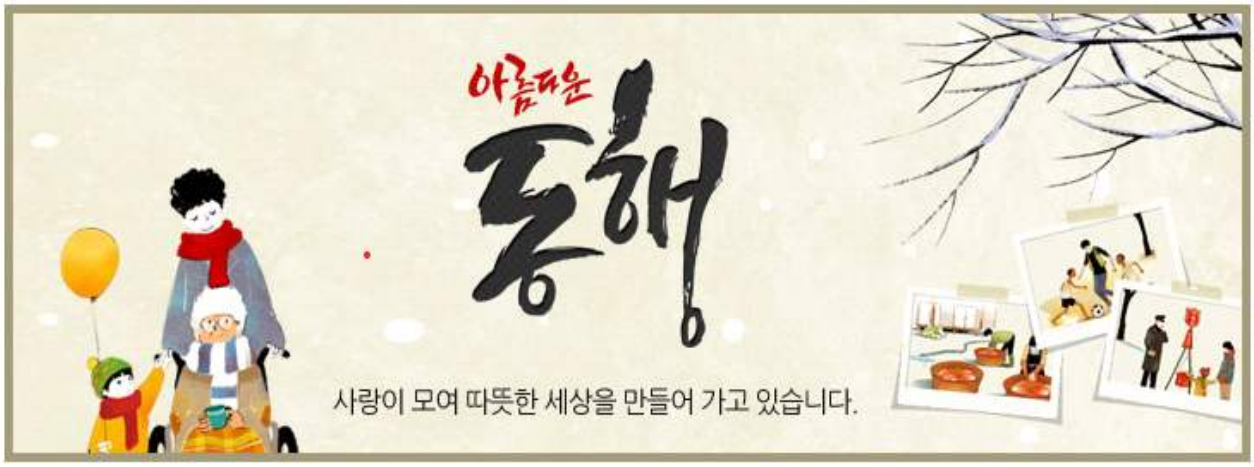

후원의 종류

지정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직접 내방,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정기 후원 하실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직접 내방,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비지정,일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어르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어르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계좌안내 :

○ 자원봉사 안내 (신청은 기관전화 : 032-327-7001)

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의료봉사	한방진료, 수지침
이미용봉사	목욕, 마사지, 머리커트,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	행사지원, 노래, 레크레이션

● ICT 기술서비스 (보호자 앱)

-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호자 앱을 통하여 부모님의 건강상태 및 앨범사진을 제공 합니다.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앱을 통해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 합니다.

■ 가족돌봄앱 주요장점

▶ 이용신청은 기관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노인학대예방 정보.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코로나 대응 현황

단계 /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사항	1) 이용시설 차량 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